

 금융위원회	<h1>보도 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보도	2017. 5.23.(화) 조간 이후	배포	
책 임 자	금융위 공정시장과장 이 석 란(02-2100-2680)	담 당 자	노 소 영 사무관 (02-2100-2682)	
	금감원 자산운용국장 류 국 현(02-3145-7690)		이 정 두 팀 장 (02-3145-7621)	

제 목 : 「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I. 선진화 방안 주요내용

- 신용평가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, 지난해 9월 신용평가 방식·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「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」을 마련하여 추진 중 (16.9.22.)

< 주요 내용 >

- ①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 신평사 진입을 허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구축되었는지 여부를 주기적 검토
- ② 자체신용도 공개, 공시 확대, 신평사 역량평가 실시 등을 통해 신용평가에 대한 시장의 규율·감독을 강화
- ③ 제3자 의뢰평가 허용, 신평사 선정 신청제 도입, 펀드 신용평가 도입 등을 통해 신평사의 발행기업에 대한 독립성을 제고
- ④ 투자자-신평사-발행기업간 건전한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해상충 방지장치 강화
- ⑤ 부실평가사, 신평사에 대한 제재(퇴출·영업정지 포함)의 실효성과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

II. 주요 추진현황

가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 구축운영

< 선진화 방안 내용 >

- 신규 신평사의 진입 관련 시장·전문가 의견수렴(16.7~9월) 결과
 - 현재 수준의 제도·기준·관행 및 시장 상황 하에서는 신규진입 허용시,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*이 크다는 평가
 - * 영업경쟁으로 인한 부실평가·등급쇼핑 확대, 파이(pie) 나눠먹기 심화 등
 - ⇒ 우선은 전반적인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, 추후 신용평가시장 환경의 개선 추이를 감안하여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
- 이를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사 진입이 평가품질 제고 등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

- 「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*」를 구성(16.12월)하였고,
 - * (구성) 금투협·상장협·업계·금융위·금감원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8인
 - '17.5월 중 제 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적으로 신용평가시장 평가를 위한 점검항목(Check-list)을 마련하고, 현행 신용평가업 인가요건도 강화·개선할 계획
 - 또한, 매년 1회 신규진입을 허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구축되었는지 여부를 검토·평가할 예정

< 신규진입을 위한 신용평가시장 평가 Check-list (예시) >

- 1) (시장여건 평가) 신용평가 시장규모(pie)가 안정적 성장하고, 시장의 경쟁압력 약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 등
- 2) (제도·관행 개선효과 평가) 「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」에 따른 제도·관행 개선이 이행되었는지 여부*

* ① 시장의 적극적인 평판 형성을 통한 신평사 규율 확립, ② 신평사의 발행기업에 대한 독립성 제고, ③ 이해상충 방지체계 강화, ④ 부실평가에 대한 실효적 감독·제재

나 자체신용도* 공개

* 자체신용도(stand-alone rating)란 모기업·계열사 등 지원가능성을 제외한 개별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 능력을 의미

< 선진화 방안 내용 >
 모기업·계열사 등 지원가능성 있는 민간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의 무보증사채 신용평가지, 기업의 자체신용도를 공개

'17.1.1일부터 실시되는 민간 금융회사*의 모든 정기·수시·본평가지 자체신용도를 공개하여, 1분기 중 64개사**가 공개

*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(산은·수은·기은·증금 등)은 제외
 ** 은행 11, 증권 19, 보험 2, 여전사 30, 부동산신탁회사 2

○ 최종신용등급-자체신용도간 차이가 1 notch 이하인 경우가 대다수 (60개사, 93.7%)였으며, 4개사만 2 notch 차이*를 보임

* 정부 또는 모회사로부터 지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거나, 모회사의 최종등급-자체신용도간 차이가 커서 영향을 받은 경우 해당

< 업종별 최종등급-자체신용도간 차이 현황 >

(단위 : 개사, %)

구분	동일		1 notch 차이		2 notch 차이		계
	개사	(비율)	개사	(비율)	개사	(비율)	
은행	-	-	9	(81.8)	2	(18.2)	11
증권	8	(42.1)	11	(57.9)	-	-	19
보험	1	(50.0)	1	(50.0)	-	-	2
카드	-	-	7	(100.0)	-	-	7
캐피탈	3	(13.0)	19	(82.6)	1	(4.3)	23
신탁	1	(50.0)	-	-	1	(50.0)	2
계	13	(20.3)	47	(73.4)	4	(6.3)	64

* 신평사별 등급이 다른 경우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등급을 적용

➔ 자체신용도 공시를 통해 신평사의 등급 산정과정의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어 등급적정성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

다 신용평가 비교·공시 확대 및 신평사 역량평가 실시

< 선진화 방안 내용 >
 ①매년 금투협 중심으로 각 신평사별 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, ②신용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공시를 대폭 확대

① (역량평가) 금투협 중심으로 「역량평가 위원회*」를 구성('17.5월)

* (구성) 학계 1, 연구원 1, 금투업계(증권·운용) 4, 보험 1 등 총 7인

○ '17.5월 동 위원회를 통해 각 신평사의 신용평가 역량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발표 (※ 5.23일 금투협 보도자료 참조)

- i)신용등급의 정확성, ii)안정성, iii)예측지표의 유용성에 대한 정량(70%)·정성(30%) 평가를 실시하여 각 부문별 우수 신평사 발표

○ 향후에도 매년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발표(매년 4월) 함으로써 시장에서 각 신평사를 판단·규율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공할 계획

② (공시확대) 금투협 채권전용 홈페이지(www.kofiabond.or.kr)를 통해 각 신평사별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비교공시를 확대 제공 중

○ 또한, 신평사가 이해관계자의 정보제공 여부 등 중요정보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는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완료('17.2월 시행)

	새롭게 추가된 공시항목
금투협 비교공시	- 광의부도* 기준 평균누적부도율 * 법원의 파산신청 등 채무불이행(협의부도)뿐만 아니라, 채권단 자율 협약·워크아웃 등도 부도에 포함 - 부도기업에 대한 등급평정 추이 - 등급변동 상위기업(연초대비 3notch ↑ 변동) 명단 및 평가추이 - 연도별 등급 상하향 업체수 및 비율
신평사 중요정보 공시	- 평가방법론 개정시, 최소 1개월 전 개정내용 공시 - 구조화상품에 대한 신용평가지, 자산보유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평가결과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공시 - 신용등급 변동현황*에 대한 추적기간 확대(1년 → 3년) * 각 신평사의 전체 신용평가 결과를 신용등급(AAA~D)별로 분류하여 기초대비 기말에 등급이 변동한 정도(변동 개수, 비율)를 나타낸 현황

라 펀드 신용평가 도입

< 선진화 방안 내용 >

- 대표 채권형 펀드에 대해 **2년간 수수료 없이 신용평가를 시범 제공함**으로서 채권형 펀드 신용평가시장 활성화 유도

- 펀드 신용평가 시범대상으로 **8개 자산운용사의 9개 대표 펀드***를 선정하여 각 신평사에 배정('16.11월)
→ 현재 운용사-신평사간 계약 체결 후 **신용평가 진행 중**으로 '17. 하반기 중 해당 펀드에 대한 신용등급을 시장에 제공할 예정
- * 설정규모가 크고 국내 회사채 투자비중이 높은 모펀드 위주로, 신평사 (한기평·한신평·NICE)당 3개 펀드에 대한 신용평가 실시

마 법령규정 개정

< 선진화 방안 내용 >

- 신평사의 발행기업에 대한 독립성 제고를 위해 **제3자 의뢰평가***를 허용하고, 신평사 선정 신청제** 도입
 - * 발행기업의 의뢰없이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신용평가하는 방식
 - ** 발행기업의 신청에 따라 금감원이 신평사를 선정해주는 제도(금감원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현행 복수평가 의무 면제)

- 신평사의 **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강화**하고 위반시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하는 한편, 부실평가에 대한 **손해배상책임도 강화**

- 신평사의 **부실평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**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'17.상반기 중 입법예고 예정

- 그밖에 **하위 법규**(자본시장법 시행령, 금융투자업 규정) **개정**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평사·발행기업·투자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 추진 중*
 - * 입법예고('17.3.10~4.20) 후 규제위·법제처 심사를 거쳐 **9월경** 개정완료 예정
→ 개정 완료 후 즉시 시행